

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11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(2005.8.4)에 따라 동법률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에서 규정한 ‘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’하여야 하므로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를 설치하되 「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에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 기능 대행 (안 제3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“도 조정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하고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</u> 제1조 ~ 제2조 (생략) 제3조(기금운용심의) 기금의 조성 및 관리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<u>심의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<u>1.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2. 지원기금의 조성,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</u> <u>3. 지급대상자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</u> <u>4. 기타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 제4조(기금관리 · 운용) (생략)	<u>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 제1조 ~ 제2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<u>운용 ·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</u> <u>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u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</u> <u>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u> <u>3.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u> ③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 제4조(기금관리 · 운용)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지급대상) ①기금의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·미진학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 구분 지급하고 <u>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</u> 1. ~ 3. (생략) 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<u>도정조정위원회의</u>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 <u>다만, 산업체 근로청소년 시설등에 한한다.</u> ③ (생략) 제6조(대상추천자 및 선발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<u>도정조정위원회의</u>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·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. 제7조 ~ 제8조 (생략)	제5조(기금지급대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<u>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.(삭제)----- 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(대상추천자 및 선발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심의위원회----- ----- ----- 제7조 ~ 제8조 (현행과 같음)
--	--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